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12일, 조경태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소위(2025.02.26.)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03.0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경태의원)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와 우리해역 내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과 같이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독도 등 주변국가와 해양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종합적인 해양 치안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높아졌음.

현재 저장도·비군사적 해양위협은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광활한 관할 해역을 고려할 때 부족한 해양경찰 경비세력을 활용한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이 요구됨.

이에 각종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안보·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 또는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경우, 해양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을 초

래하는 만큼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여 UN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가.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수집·분석이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2호).

나. 현행 「해양경비법」은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제19조)하고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협조를 받는 데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본 조 후단에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기관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공공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지물품의 이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임재금)

가. 해양경비정보의 범위 등 정의 마련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의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신설).

현행법상 해양경비는 해양안보, 해상치안, 해양재난 예방 및 대응,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 등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직결된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바, 해양경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양경비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양경비정보’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정보 수집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체계적인 정보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비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경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해양경비정보를 ‘해양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장소적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범위가 제한 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양경비법의 목적 규정에 맞추어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2조제12호 나목의 ‘선박 등의 운항에 관한 정보’와 같은 호 다목의 ‘선박등의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는 그 범위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나목을 ‘선박등의 운항·보안·안전에 관한 정보’로 수정하고 다목에서 ‘선박등’을 삭제하여 시설의 안전·보안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나.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최근 우리 해역 내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어선 출현 등 해양안보, 자원확보 등에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광활한 관할 해역에 비하여 해양경찰 경비세력이 부족하므로, 각종 해양 위협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측된 정보를 토대로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해양경비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융합·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비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동시에 정보 수집과 활용에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집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서 해양경비정보는 해양주권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민감정보로서 기밀성이 높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무원의 비밀누설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비밀

누설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형법상 비밀누설죄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

안 제7조의2제4항에서는 해양경비정보를 다루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외부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당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바, 이들의 비밀누설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비밀누설죄로 처벌하려는 경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다.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금지물품 수송 의심 선박등’ 을 추가

개정안은 해양경찰관이 해양경비 활동 중에 해상검문검색과 추적·나포(拿捕)할 수 있는 대상에 ‘금지물품 수송 의심 선박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현행법은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대량과괴무기,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에 대하여 정선(停船) 요구, 승선(乘船), 질문, 사실 확인, 선체(船體)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추적·나포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 등에 따라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는 ‘금지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문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금지물품 운송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나포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대북제재 물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나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물품 수송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참고로, 일본은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및 금지물품 수송 관련 국제제재 이행을 위해, 일본 국내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다만, 해상검문 검색 및 추적·나포의 대상이 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의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금지물품’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해상검문검색이나 추적·나포의 대상이 되는 선박을 수식하는 문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조경태)

해양경비정보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는 금지물품 운송 의심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밀성이 높은 해양경비정보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등에 대하여 검문·검색 없이 곧바로 추적·나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음.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1.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해양경비정보의 정의가 장소적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수집 범위가 제한 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 한정하고, 해양경비정보는 기밀성이 높으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지물품 수송 의심 선박등에 대해서 검문검색 없이 곧바로 추적·나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해양경비정보의 정의를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 한정하고, 그 범위가 중복되는 내용을 명확히 정리함(안 제2조제12호).
- 나. 해상검문검색 대상인 ‘금지물품 수송 의심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다.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등에 대하여 검문검색 없이 곧바로 추적·나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13조

제3호 삭제).

라.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수탁자의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3 신설).

마.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함(안 부칙).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해양경비를 위하여 필요한”을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중요시설 및 선박등의”를 “중요시설 등의”로 한다.

나. 선박등의 운항 및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선박등의 위치, 출
·입항, 승선원 및 화물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안 제12조제1항제2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안 제1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해양경비정보”</u> <u>란 해양경비를 위하여 필요한</u>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u> <u>가.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u> <u>나. 선박등의 위치, 출·입항, 승선원 및 화물 등 선박등의 운항에 관한 정보</u>	제2조(정의) ----- ----- -----. 1. ~ 11. (개정안과 같음) 12. ----- <u>-----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u> ----- ---. <u>가. (개정안과 같음)</u> <u>나. 선박등의 운항 및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선박등의 위치, 출·입항, 승선원 및 화물 등의 정보를 포함한</u>

다. 해양시설, 입
해 중요시설
및 선박등의
보안 · 안전에
관한 정보

라. 해양에서 수
집한 영상 · 음
성 · 음향 · 전
기통신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
· 가공 · 활용
된 정보

마. 수심 · 조류 ·
해양기상 등
해양 특성과
해저자원, 해양
수산자원 등에
관한 정보

바.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
는 정보

사. 가목부터 바
목까지의 정보
를 결합 · 융합

다)

다. -----
---중요시설
등의-----

라. ~ 사. (개정
안과 같음)

	<u>. 분석 . 가공</u> <u>하여 생성된</u> 정보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 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 을 합리적으로 판단 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 검색을 실시할 수 있 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비준 한 조약 또는 일반적 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에 따라 실시한다.	① -----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 -----.
1. (생 략)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1. (현행과 같음) 2.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한 국 제적 노력에 특 히 기여하기 위 하여 대량파괴무 기,----- 무기	1. (개정안과 같음) 2. 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 의 수송에 사용 되고 있다고 의 심되는 선박등

른다. 1.2. (생 략) <u><신 설></u>	---. 1.2. (현행과 같음) 3. <u>국제평화와 안</u> <u>전유지를 위한</u> <u>국제적 노력에</u> <u>특히 기여하기</u> <u>위하여 금지물품</u> <u>의 수송에 사용</u> <u>되고 있다고 의</u> <u>심되는 선박 등</u> <u><신 설></u>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 1.2. (개정안과 같 음) <u><삭 제></u> 제20조의3(벌칙 적 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7조의2제4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의 임직원 중 공무 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 -----.
--	---	--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해양경비정보”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

나. 선박등의 운항 및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선박등의 위치, 출·입항, 승선원 및 화물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다. 해양시설, 임해 중요시설 등의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

라. 해양에서 수집한 영상·음성·음향·전기통신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가공·활용된 정보

마. 수심·조류·해양기상 등 해양 특성과 해저자원, 해양수산자원 등에 관한 정보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정보를 결합·융합·분석·가공하여 생성된 정보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

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제19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장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

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해양경비정보”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u> <u>가.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u> <u>나. 선박등의 운항 및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선박등의 위치, 출·입항, 승선원 및 화물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u> <u>다. 해양시설, 임해 중요시설 등의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u> <u>라. 해양에서 수집한 영상·음성·음향·전기통신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가공·활용된 정보</u> <u>마. 수심·조류·해양기상 등</u>

<신 설>

해양 특성과 해저자원, 해
양수산자원 등에 관한 정
보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정보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정
보를 결합·융합·분석·
가공하여 생성된 정보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
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
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
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
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을 위
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
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
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
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
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은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1. · 2. (생략)

<신 설>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
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
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
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금

3. (생 략) ② (생 략)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u><후단 신설></u> <u><신 설></u>	<u>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u>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협조요청) ----- ----- ----- ----- -----. <u>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	---